

의안번호	2213580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 계 번호	25D5595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상정보 등록·관리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억 1,200만원, 2031년 52억 2,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6억 3,400만원(연평균 35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40	-	-	40	-	80	-
대책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16	16	16	16	16	80	-
신상정보 등록관리(안 제27조 등)	1,056	2,343	3,701	5,166	5,208	17,474	-
합계	1,112	2,359	3,717	5,222	5,224	17,634	3,527

주: 본 추계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경찰청장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제5조에 따른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3.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대책과 수사·교육·홍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대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국제협력)	정부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22조(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2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제25조제5항·제6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제1항) 1. 등록대상 범죄 경력정보 2. 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의무규정
	안 제28조(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 위원회의 설치·운영)	○	—
3	안 제7조(국제협력)	— (미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4	안 제22조(수사 지원 및 교육)	— (미대상)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수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이버수사역량강화(1231-315)” 사업(2025년 기준 146억 1,000만원)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27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
	안 제28조(등록정보의 관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5조),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안 제27조 및 제28조)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최근 경찰청이 추진한 “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연구”(2021~2022년)와 “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5~2029) 연구”(2024년)을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경찰청 소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구분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5~2029) 연구
목적	기능별로 분리·추진되는 인권정책을 종합하여, 인권 중심 경찰행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도출	경찰 성평등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성 있는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
발주기관	경찰청	경찰청
연구기관	창원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간	‘21.8.~’22.2.	‘24.4.~’24.10.
연구용역비	34,500,000원	46,363,630원

자료: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https://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¹⁾는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최대 인원인 20명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과반수인 11명으로 가정함
 - 대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회의 개최실적²⁾을 참고하여 각각 연 3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 1) 제5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대책과 수사·교육·홍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생략>

- 2)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본회의) 회의개최실적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2회	4회	2회	5회	2회	15회	3회

- 3)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본 추계에서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비용은 제정안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와 법무부 소관 “전자감독(1635-301)” 사업 중 신상정보등록 전담 요원(공무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함

○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현황과 신상정보등록 전문요원은 다음과 같음.
1명당 신규사건 신상정보등록 건수는 연평균 2,887건(14,436건/5명)

[표 3]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신규사건	13,071	13,485	14,580	15,231	15,813	72,180	14,436

자료: 법무부

[표 4]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문요원: 2025년

(단위: 명)

구분	신규사건 등록	기존 등록사건 정보관리	합계
인원	5	19 (신규사건 대비 비율 3.8)	24

자료: 법무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법무부 소관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담 요원(공무직 24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 법무부 소관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운영 예산: 2024~2025년

구분	2024	2025
상용임금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2명×2,566천원×12월 = 677백만원 · 2명×2,566천원×9월 = 46백만원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4명×2,473천원×12월 = 712백만원
복리후생비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2명×500천원 = 11백만원 · 2명×500천원×0.75 = 0.7백만원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4명×500천원 = 12백만원

자료: 법무부 소관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I-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6]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발생 건수: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전화금융사기		31,681	30,982	21,832	18,902	20,839	124,236	24,847
유사수신		993	496	864	875	1,426	4,654	931
불법다단계		187	56	46	86	61	436	87
전통신 이용범죄	사이버사기	174,328	141,154	155,715	167,688	208,920	847,805	169,561
	사이버금융범죄	20,248	28,123	28,546	26,600	17,905	121,422	24,284
	합계	227,437	200,811	207,003	214,151	249,151	1,098,553	219,71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정안은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건발생 건수에 재산범죄 기소율(2023년 기준 31.3%)⁴⁾을 적용하면, 제정안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건수는 연평균 68,769건로 추정됨
 - (신규) 신상정보등록 건수 68,769건 = 219,710건×31.3%(기소율)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신규사건 등록 24명, 기존사건 정보관리 90명 등 총 114명으로 추정됨

[표 7]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추정: 연평균 기준

1명당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건수(A)	디지털다중피해사기 사건 기소 건수(B)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신규사건 등록 (C=B/A)	기존사건 정보관리 (D=C×3.8)	소계
2,887건	68,769건	24명	90명	114명

자료: 법무부와 경찰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신규사건 등록 인원(24명)은 2027년에 채용하고, 기존사건 정보관리 인원(90명)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⁵⁾를 적용하고, 퇴직금적립금은 보수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적용함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4) 주요 형법범죄별 기소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주요형법범죄	재산범죄	27.7	27.6	27.8	29.7
	강력범죄(홍약)	46.9	50.0	44.3	38.9
	강력범죄(폭력)	27.8	31.8	21.4	33.1
전체 형법범죄	29.9	30.9	30.3	31.6	33.1

주: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포함됨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요 형법범죄 기소율(<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6>)

5)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3.8
기관부담 요율(%)	11.436	11.750	12.064	12.406	12.750	13.096
소비자물가상승률(%)	2	2	2	2	2	2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는 경찰청이 실시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5~2029)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함. 용역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비: 40백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3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8]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40	-	-	40	-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5조)

- 회의참석수당은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 추가분(11명)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위원정수: 20명(민간위원 11명)
 - 회의횟수: 대책위원회 연 3회, 분과위원회(공공분야, 민간분야) 연 각 3회
 - 민간위원 11명은 1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 25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9] 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책위원회	지급인원	11	11	11	11	11	-
	지급단가	0.25	0.25	0.25	0.25	0.25	-
	회의횟수	3	3	3	3	3	-
	소계	8	8	8	8	8	40
분과위원회 (공공/민간)	지급인원	11	11	11	11	11	-
	지급단가	0.25	0.25	0.25	0.25	0.25	-
	회의횟수	3	3	3	3	3	-
	소계	8	8	8	8	8	40
합계		16	16	16	16	16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안 제27조 및 제28조)

- 제정안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관리 비용은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월 임금 단가: 2025년 기준 1명당 2,473천원에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복리후생비 단가: 2025년 기준 500천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의 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10]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월,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 건 비	보수	월 임금(A)	2.667	2.768	2.874	2.983	3.096	-
		인원(B)	24	54	84	114	114	-
		개월(C)	12	12	12	12	12	-
		소계(D=A×B×C)	768	1,794	2,897	4,081	4,236	13,776
	기관부담금(E=D×요율)		90	216	359	520	555	1,740
	퇴직금적립금(F=D/12)		64	149	241	340	353	1,147
	소계(G=D+E+F)		922	2,159	3,497	4,941	5,144	16,663
	복리후생비(H) ¹⁾		12	29	45	63	64	213
	자산취득비(I) ²⁾		122	155	159	162	-	598
	합계(J=G+H+I)		1,056	2,343	3,701	5,166	5,208	17,474

주 1. 복리후생비는 근무인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복리후생비 단가(2025기준 50만원)을 적용함

2. 자산취득비는 해당연도 채용인원(2027년 24명, 2028~2030년 매년 30명)에 자산취득비 단가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상정보 등록·관리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억 1,200만원, 2031년 52억 2,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6억 3,400만원(연평균 35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40	-	-	40	-	80	-
대책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16	16	16	16	16	80	-
신상정보 등록관리(안 제27조 등)	1,056	2,343	3,701	5,166	5,208	17,474	-
합계	1,112	2,359	3,717	5,222	5,224	17,634	3,527

주: 본 추계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전담요원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